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청구이의

원 고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

피 고

변 론 종 결

판 결 선 고

주 문

1. 피고의 원고에 대한 [redacted]지
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933,689원과 이에 대하여 2025. 6. 6.부터 2025. 11. 12.까지 연

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이 법원이 [REDACTED]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[REDACTED]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.

4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5. 소송비용 중 1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6. 제2,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